

【 8 】 양주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8. 2. 11.

제출자 : 양주군수

□ 제안이유

농촌근대화촉진법이 농어촌정비법으로 1997. 1. 13일 흡수 개정됨에 따라 “양주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를 1997. 1. 13일 개정된 농어촌정비법과 부합되게 정리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관련법령의 인용 조항을 개정함(안 제1, 3, 8조)
- 나. “사용료”를 “사용경비”로 함(안 제1, 3, 4, 5, 7조)
- 다. “농지개량시설”을 “농업기반시설”로 개정함(안 제1, 2, 5조)

양주군 조례 제 호

양주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조례의 제명중 “양주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를 “양주군농업기반 시설의목적외사용경비징수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중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8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의 8”을 “농어촌정비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3항”으로하고 “농지개량시설”을 “농업기반시설”로하며, “사용료”를 “사용경비”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중 “농지개량시설”을 “농업기반시설 및 용수”로 한다

제3조 제목중 “사용료”를 “사용경비”로하고 본 문중 “농지개량 시설의 목적외 사용료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를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경비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로하며 “제1호 내지 제5호”를 “삭제” 한다.

제4조 제목중 “사용료”를 “사용경비”로 하고 ,동조 제1항 및 제2항중 “사용료”를 “사용경비”로 한다.

제5조 제목중 “사용료”를 “사용경비”로 하고 본문중 “사용료는 농지개량시설” 을 “사용경비는 농업기반시설”로 한다.

제7조 제목중 “사용료”를 “사용경비”로 하고 본문중 “사용료”를 “사용경비”로 한다.

제8조(준용)중 “농촌근대화촉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양주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의사용료징수조례	<u>양주군농업기반시설의목적의사용경비징수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8조의 4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시설의 목적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농어촌정비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3항</u> ----- ----- <u>농업기반시설</u> ----- ----- <u>사용경비</u> ----- -----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관리하는 농지개량시설의 목적의 사용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 <u>농업기반시설 및 용수</u> ----- -----
제3조(사용료) 농지개량시설의 목적의 사용료 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사용경비)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의 사용 경비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삭제)
1.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 또는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유지관리비	(삭제)
2. 농업용수를 사용하게 한 때에는 500톤 마다 당해 시설물리지구의 10a에 해당하는 평균조합비와 동일한 금액	(삭제)
3. 시설부지인 토지를 이용 또는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 토지의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삭제)
4. 생산물에 대하여는 생산, 포획, 채취 등의 방법으로 수익한 생산물 시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삭제)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경우에는 군수 가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한금액	(삭제)
제4조(사용료징수) ① 제3조 규정의 사용료는 이를 매년 징수한다. ② 사용료 체납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4조(사용경비징수) ----- <u>사용경비</u> - ----- ② <u>사용경비</u> -----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u>사용료</u> 납부기간) 제3조 규정의 <u>사용료</u> 는 농지개량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시 선납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때에는 납부기간 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u>사용경비</u> 납부기간) ----- <u>사용경비는</u> <u>농업기반시설</u> ----- ----- ----- -----
제7조(<u>사용료</u> 면제)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 으로 하거나 당해시설 관리자가 당해시설의 유지관리비 충당 범위내에서 비영리 공동 사업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 각호에 의한 <u>사용료</u> 를 징수하지 아니하할 수 있다.	제7조(<u>사용경비</u> 면제) ----- ----- ----- <u>사용경비</u> -----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u>농촌근대화촉진법</u> 을 준용한다	제8조(준용) ----- <u>농어촌정비법</u> -----

제14편 건설 제3장 농업기반 양주군농지개량시설의 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

양주군농지개량시설의 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

[1981. 1. 10]
[조례 제726호]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 158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 시설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관리하는 농지개량 시설의 목적외 사용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 3 조(사용료) 농지개량 시설의 목적외 사용료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 또는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유지관리비
2. 농업용수를 사용하게 한 때에는 500톤마다 당해 시설몽리지구의 10a에 해당하는 평균조합비와 동일한 금액
3. 시설부지인 토지를 이용 또는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 토지의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4. 생산물에 대하여는 생산, 포획, 채취 등의 방법으로 수익한 생산물 시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경우에는 군수가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한 금액

제 4 조(사용료징수) ①제3조 규정의 사용료는 이를 매년 징수한다.

- ②사용료 체납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 한다.

제 5 조(사용료 납부기간) 제3조 각호에 의한 사용료는 농지개량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때에는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6 조(사용기간) ①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②제1항의 사용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단, 갱신한 날로부터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7 조(사용료 면제)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당해시설 관리자가 당해시설의 유지관리비 충당 범위내에서 비영리 공동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 각호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8 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농촌근대화 촉진법을 준용한다.

제14편 건설 제3장 농업기반 양주군농지개량시설의 목적 외사용료징수조례

부 칙 (1981. 1. 10 조례 제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農漁村整備法

소관부처 : 농림부

制定 1994·12·22 法律第4823號
 改正 1995·12·29 法律第5109號(韓國土地公社法)
 1997·1·13 法律第5279號

第1章 總 則

第1條 (目的) 이 법은 農水產業生產基盤, 農漁村生活環境과 農漁村休養資源 및 限界農地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整備·開發하여 農水產業의 競爭力 향상과 農漁村生活環境改善을 촉진함으로써 현대적인 農漁村建設과 國家의 均衡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7·1·13>

1. “農漁村”이라 함은 郡의 地域과 市의 地域중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2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地域을 말한다.
2. “農漁村整備事業(이하 “整備事業”이라 한다)”이라 함은 農水產業 生產基盤을 造成·擴充하기 위한 農業生產基盤整備 및 水產業生產基盤整備, 生活環境改善을 위한 農漁村生活環境整備와 農漁村休養資源開發 및 限界農地등의 整備事業을 말한다.
3. “農業生產基盤整備事業”이라 함은 다음 各目的 사업을 말한다.
 - 가. 農漁村地域의 農業用水等 農漁村用水開發事業
 - 나. 耕地整理, 排水改善, 水利施設 改善修等 農業生產基盤改良事業
 - 다. 農水產業을 主目的으로 하는 干拓·埋立·開墾등 農地擴大開發事業
 - 라. 農業主產園地造成 및 營農施設擴充事業
 - 마. 기타 農地의 開發 또는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農業生產基盤施設”이라 함은 農業生產基盤整備事業으로 設置되거나 기타 農地의 보전이나 農業生產에 이용되는 賯水池(農漁村用水의 확보를 目的으로 河川, 河川區域 또는 沿岸區域등에 물을 賯溜 또는 관리하기 위한 施設, 洪水面 및 水面敷地를 말한다), 揭水場, 管井等 地下水利用施設, 排水場, 取入汎, 用·

第24編 農業 第2章 農地 農漁村整備法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水質環境保全法 第16條 내지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 및 措置등을 요구할 수 있다. <改正 97·1·13>

②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要求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7·1·13>

第20條 (農業基盤施設의 目的의 사용) ①農業基盤施設管理者가 農業基盤施設 또는 用水률 農業등 본래 이외의 目的으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다른 者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農業基盤施設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1·1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目的의 사용은 그 본래의 目的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③農業基盤施設管理者는 農業基盤施設 또는 用水률 農業등 본래 이외의 目的으로 사용하는 使用者로부터 農業基盤施設의 유지 또는 補修에 필요한 전부 또는 일부의 經費를 徵收할 수 있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目的의 사용에 따른 경비를 徵收하는 경우에는 地方稅滞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徵收할 수 있다.

⑤經費徵收範圍와 徵收된 經費의 사용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1條 (農業基盤施設의 廢止) ①農業基盤施設管理者는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市·道知事의 승인을 얻어 農業基盤施設을 廢止할 수 있다.

1. 廢止하고자 하는 農業基盤施設로부터 이익을 받고 있는 農耕地등이 다른 目的으로 轉用된 때
2. 廢止하고자 하는 農業基盤施設로부터 이익을 받고 있는 農耕地등에 대한 代替施設이 完備된 때
3. 天災地變 기타 不可抗力의 사유에 의하여 施設이 損壞되어 農業基盤施設補修의 經濟性이 없어졌을 때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止하는 農業基盤施設의 賣却代金은 第15條第3項의 예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소관부처 : 농림부

제정 1995. 6. 23 대통령령 제14679호
 개정 1996. 8. 8. 대통령령 제15135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997. 7. 31 대통령령 제15448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영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농어촌용수개발사업의 범위) 법 제 2 조제 3 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용수개발사업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농업용수·공업용수·수산용수와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용수의 개발사업으로 한다.

제 3 조 (한계농지의 기준) 법 제 2 조제 9 호의 규정에 의한 한계농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로 한다. <개정 96. 8. 8. 97. 7. 31>

1. 농지개량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의 조합구역밖의 농지로서 최상 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제곱미터미만인 농지. 다만, 경지정리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이 시행된 지역과 법 제 3 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결과 농림부장관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농지를 제외 한다.
2. 광업법에 의한 광업권이 기간만료 또는 취소로 소멸된 광구의 인근지역의 농지로서 토양오염등으로 인하여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농지

제 2 장 농어촌정비를 위한 자원조사·활용

제 4 조 (자원조사의 대상등) ①법 제 3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의 대상 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지의 분포상태 및 이용에 관한 사항
2. 마을의 분포 및 인구변동의 추이에 관한 사항
3. 생산기반정비에 관한 사항
4. 농지의 경사도·토양 및 배수상태의 특성에 관한 사항
5. 관광휴양자원에 관한 사항

第24編 農業 第2章 農地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1조 (농업기반시설의 보호·관리) ① 농업기반시설관리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보호·관리를 위한 농업기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하 "시설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반시설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시설관리계획에 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농업기반시설관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농림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밀안전진단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6. 8. 8>

④ 농업기반시설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시설관리계획에 의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농업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기반시설의 보호·관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농업기반시설이 설치된 구역안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2. 농업기반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나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표지의 설치

⑥ 농업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기반시설의 효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상류유역에 시설물설치의 제한 또는 금지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관리계획의 수립,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일상점검·정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6. 8. 8>

제22조 (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 농림부장관은 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농어촌용수의 수질오염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농림부령이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96. 8. 8>

제23조 (농업기반시설 및 용수의 목적의 사용) ① 농업기반시설관리자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를 농업등 본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하거나 다른 자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 7. 31>

1. 목적의 사용이유
2. 목적의 사용의 대상이 될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양

第24編 農業 第2章 農地 농어촌정비법시행령

3. 목적의 사용의 내용·방법 및 기간
 4. 목적의 사용에 의한 농업기반시설관리자의 수지예산
 5. 목적의 사용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명칭
- ②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를 목적외로 사용하는 경우의 경비징수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적용대상이라도 철도·도로등 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기반시설관리자와 사용자와의 협의에 의할 수 있다. <개정 97.7.31>
1.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용수를 사용하게 한 때에는 사용량 1톤당 당해 시설 수혜농지 1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이에 부과되는 평균조합비와 조합운영비국고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시설의 부지인 토지를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하여 지지 아니한 토지의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감정평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유사한 토지의 평가액
 4.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생산물에 대하여는 생산·포획·채취등의 방법으로 수익한 생산물시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농업기반시설관리자와 사용자와의 협의에 의한 금액
- ③지방자치단체·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이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의 경비징수범위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징수범위에 준하여 조례 또는 경관으로 정한다.
- ④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경비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2. 농업기반시설의 개량·보수 및 보강을 위한 비용
 3. 시설의 손괴에 대비한 적립금
- ⑤법 제2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농업등 본래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농업기반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경우를